2024 성문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2024. 4.

학 생 생 활 안 전 부

2024 성문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학생생활안전부

이 지침은「초·중등교육법」제8조 및 제1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및 제31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련 근거

가.「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라.「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 기본 방침

가.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나.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부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각 학교의 학교규칙으로써 규정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

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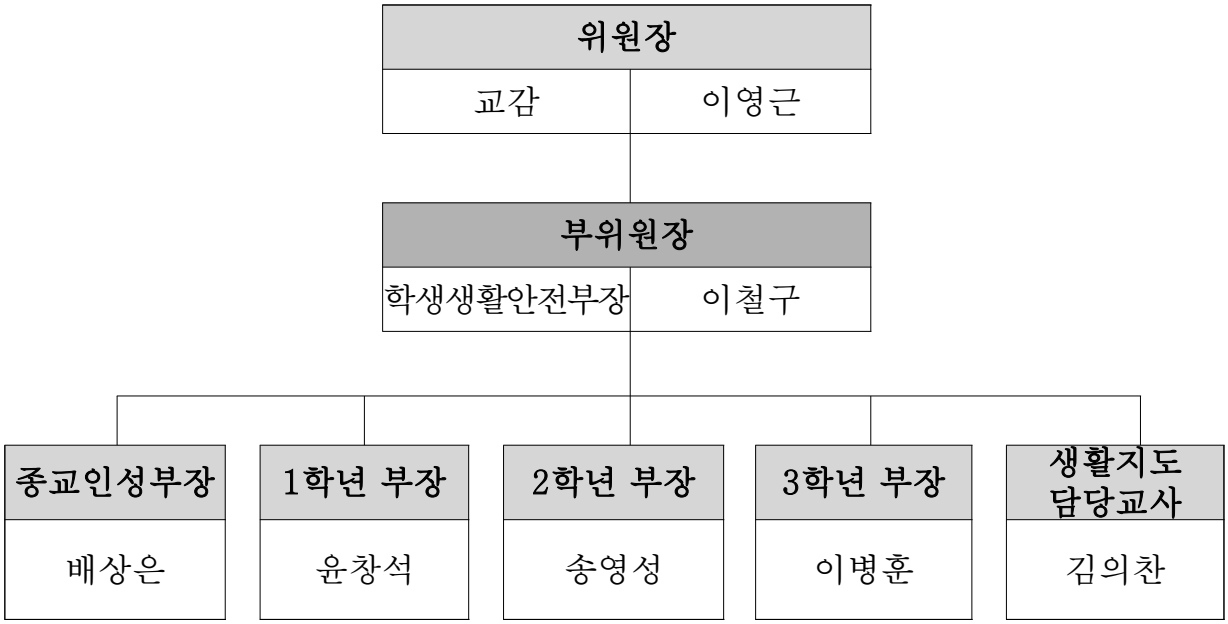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2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담임 면담(3회)
2. 교내 봉사(6회)
3. 사회봉사(10회)
4. 특별교육기관 이수(14회)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16회)
6.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18회 이상)

제1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담임면담

1. 담임선생님의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2.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② 교내봉사

1. 교육과 봉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2시간 이상 10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예시

가. 교내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쉬는 시간 및 식사 및 하교 시간에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나. 교내 성찰실 입실 : 성찰실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문 및 편지 등의 글을 쓰기

다. 격리 : 추가 사건의 우려가 있을 시 학생부 내에서 일대일 지도

라.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시간 운영

마. 특별교육기관 연계 지도 : 흡연자의 경우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바. 교내봉사 : 교내의 교구 정비 또는 환경미화활동을 통한 반성

③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25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2. 해당 학생은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 상담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5. 예시

가.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 특별교육기관 위탁

1. 30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 및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해당학생은 해당 기관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필요에 따라 교육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퇴학

1. 퇴학 조치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다.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퇴학처분 전 조치)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징 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예절	(1)	언행이 불손하여 교사가 징계요청을 한 학생	◎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변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준법	(3)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4)	교내외의 공공기물(교내 주차차량 포함)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5)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로 불참한 학생	◎				
	(6)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상습적으로(3회 이상) 태만한 학생	◎				
	(7)	징계지도에 연속으로 불응한 학생		◎	◎	◎	◎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0)	행실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11)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12)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등을 통한 학교폭력, 음해, 왕따 등 심각한 피해를 준 학생			◎	◎	◎
	(13)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 녹음, 녹화 등을 한 학생		◎	◎	◎	◎
수업	(14)	수업시간 상습적인(3회 이상) 지각이나 핸드폰 사용 등의 행실 불량으로 교사가 징계 요청을 한 학생	◎	◎			
	(15)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17)	시험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통신기기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18)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근태	(19)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0)	한 학년에 10일 이상 미인정 결석한 학생	◎				
	(21)	한 학년에 20일 이상 미인정 결석한 학생	◎				
	(22)	한 학년에 3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한 학생		◎			
	(23)	한 학년에 4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한 학생			◎		
	(24)	미인정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미인정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구분	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약물	(25)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 라이터, 술병 소지, 현장 동석 포함)	◎	◎	◎	◎	
	(26)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3회 이상) 학생		◎	◎	◎	◎
	(27)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퇴폐 행위	(28)	도박을 한 학생	◎	◎			
	(29)	상습적으로(3회 이상) 도박을 한 학생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31)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32)	불량 비디오 및 불량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	◎	◎			
	(33)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학생		◎	◎	◎	
금품 폭력	(34)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35)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의 가해 학생	◎	◎			
집단 행위	(36)	불법집회 또는 불량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3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9)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교권	(4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3회 이상) 불응한 학생	◎	◎	◎	◎	
	(4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교사의 권위를 크게 해친 학생	◎	◎	◎	◎	◎
	(42)	학생생활규정 제2장에 의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제1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18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0조(사안 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 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22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학생 선도 절차

가. 사안 발생
1)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2) 학생생활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관찰 면담
1)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2) 학생생활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1) 학생생활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2) 조사 방법

가)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3)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가)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1)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나)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바)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마. 위원회 준비

1)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2) 위 1)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나)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다)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3)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4)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바. 위원회 개최・진행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가)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나)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2) 심의

가)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나)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3)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아.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통지(서면 통지)

1)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2)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3)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4)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자. 조치 이행

1)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2)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5 학교 단위 불복절차: 재심의

가.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나.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 재심의

1)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2)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라. 학교장 조치

1)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3) 조치 이행

6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가. 재심청구

1)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3)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한다.

4) 재심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피청구인

다)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라)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나. 재심

1)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2)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4)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된다.

5)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 이후 절차

1) 재심결정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3) 시행

7 그 밖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 행정심판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031-249-0676~0679

나.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및 단계별 활용 서식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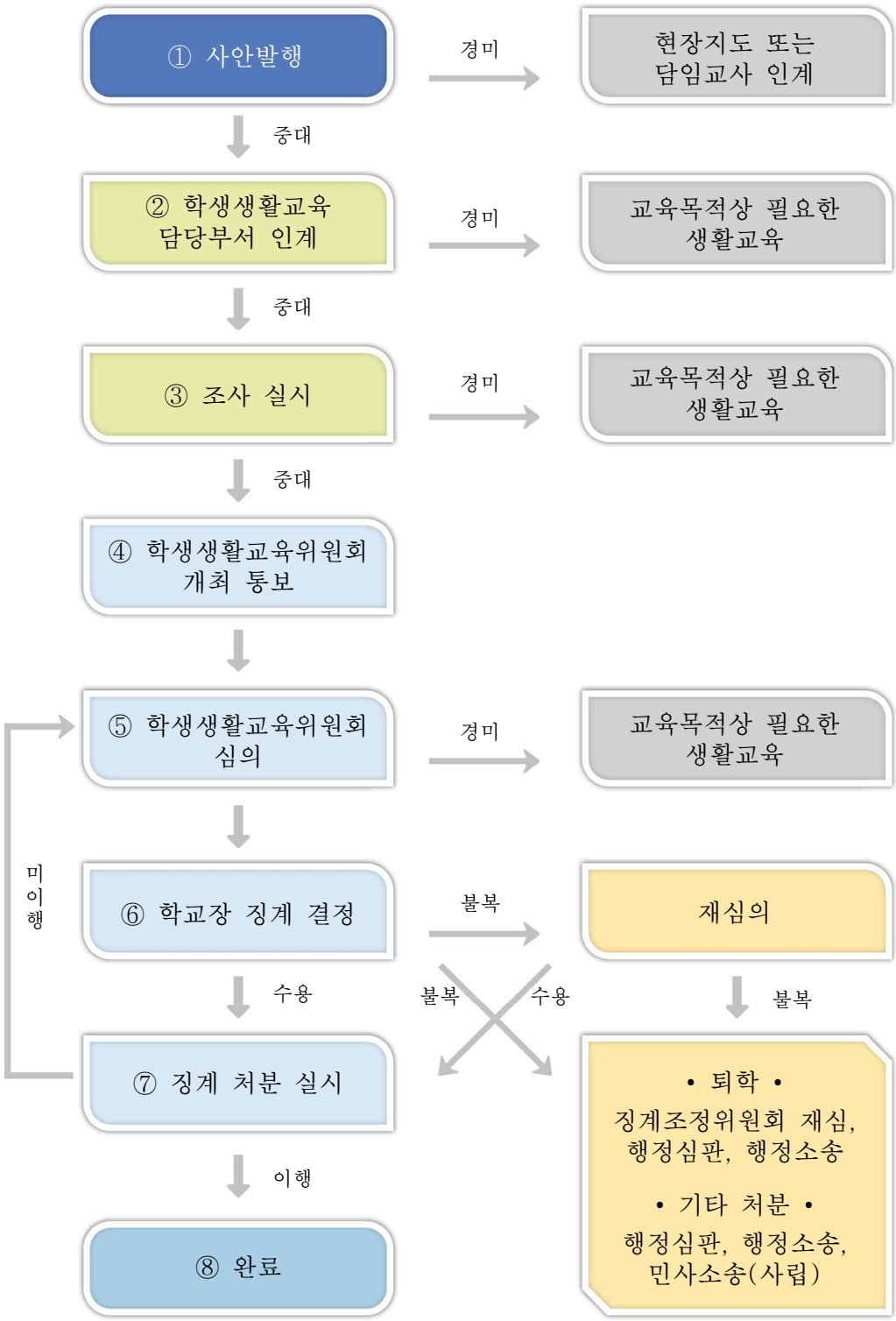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단계별 활용 서식

□ 서식 목록

1. 학생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2. 학생 자기변론서
3. 목격자 확인서
4. 사실 확인서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6.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8. 서면의견서
9.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0. 기피신청서
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1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1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15. 조치결정 통지서
16. 수령 확인서
17.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18. 재심청구서
19.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20. 재심청구 취하서
21. 개인정보 제고 및 활용 동의서
22. 사회봉사 의뢰서
23.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24. 특별교육 의뢰서
25.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26.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서식 1 》

학생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24－○차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체크 결과	서식
사안 발생	**사실 확인**	사건 정황·경위 파악	□ 확인자[ ] 확인일[ ]	
	학생 지도	1차 면담 및 생활교육 실시	□ 지도자[ ] 지도일[ ]	
	사안 접수	신고내용 '사안접수대장' 기록	□ 보고자[ ] 보고일[ ]	[서식6]사안접수대장
	사안 보고	학교장 보고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 기록자[ ] 기록일[ ]	
사안 조사	**관련자 조사**	사실 확인서 작성	□ 확인자[ ] 확인일[ ]	[서식2]학생자기변론서 [서식3]목격자확인서 [서식4]사실확인서
	입증 자료 수집	물증·증거 수집	□ 여[ ] □ 부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작성자[ ] 보고일[ ]	[서식5]사안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통지	학교장 보고	□ 보고자[ ] 보고일[ ]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상정 여부 결정	**상정 여부 협의**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결정	□ 상정 □ 미상정	
		징계 이외 지도방안(미상정 시)	□ 지도방안[ ]	
	학교장 재가	학교장의 상정 여부 결정(내부기안)	□ 상정 □ 미상정	내부기안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위원 섭외 및 학부모(보호자) 참여 가능, 일시·장소 선정	□ 수립	
	개최 안내·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내부기안	□ 기안자[ ] 결재일[ ]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서식7]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서식8]서면 의견서 [서식16]수령확인서
	징계 심의	징계 조치 심의·의결	□ 징계 □ 없음	[서식11]징계 의결서
	학교장 재가	학교장의 징계 최종 결정	□ 재가 □ 불허	내부기안 [서식12]회의록 [서식13]조치대장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서식15]조치 결정 통지서 [서식16]수령확인서
		불복절차 통지·안내	□ 통지자[ ] 통지일[ ]	
징계 시행	**이행 계획 수립**	징계 조치 이행 계획 수립	□ 수립	[서식14]이행 계획서
		학습결손 대비책 마련	□ 여[ ] □ 부	
	이행 계획 통지	학교장 보고	□ 보고자[ ] 보고일[ ]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서식14]이행 계획서
	징계 조치 시행	조치별 징계 이행 여부	□ 이행 □ 미이행	
	징계 이행 보고	학교장 보고	□ 보고자[ ] 보고일[ ]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 통지일[ ]	
	불복	징계 조치 불복 여부	□ 수용 □ 불복	[서식17]재심의 신청서 [서식18]재심 청구서

서식 2 》

학생 자기변론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table>
<tr><td>1</td><td>성명</td><td></td><td>학년 / 반</td><td>/</td><td>성별</td><td>남 / 여</td></tr>
<tr><td rowspan="5">2</td><td rowspan="5">사안
확인</td><td>누가</td><td colspan="4">(관련학생 모두)</td></tr>
<tr><td>사안 기간</td><td colspan="4">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4">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td></tr>
<tr><td>무엇을
/어떻게</td><td colspan="4">(상황, 기간 등 기록)</td></tr>
<tr><td>왜</td><td colspan="4"></td></tr>
<tr><td>3</td><td colspan="2">목격한 학생(모두)</td><td colspan="4">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td></tr>
<tr><td>4</td><td colspan="2">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td><td colspan="4"></td></tr>
<tr><td>5</td><td colspan="2">작성일</td><td>2024 년 월 일</td><td>작성 학생</td><td colspan="2">(서명)</td></tr>
</table>

서식 3 》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table>
<tr><td>1</td><td>성명</td><td></td><td>학년 / 반</td><td>/</td><td>성별</td><td>남 / 여</td></tr>
<tr><td rowspan="5">2</td><td rowspan="5">사안
확인</td><td>누가</td><td colspan="4">(관련학생 모두)</td></tr>
<tr><td>사안 기간</td><td colspan="4">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4">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td></tr>
<tr><td>무엇을
/어떻게</td><td colspan="4">(상황, 기간 등 기록)</td></tr>
<tr><td>왜</td><td colspan="4"></td></tr>
<tr><td>3</td><td colspan="2">목격한
학생(모두)</td><td colspan="4"></td></tr>
<tr><td>4</td><td colspan="2">기타</td><td colspan="4"></td></tr>
<tr><td>5</td><td colspan="2">작성일</td><td colspan="2">2024 년 월 일</td><td>작성 학생</td><td>(서명)</td></tr>
</table>

서식 4 》

사실 확인서

<table>
<tr><td>대상
학생</td><td>성명</td><td></td><td>학년 / 반</td><td>/</td><td>성별</td><td>남 / 여</td></tr>
<tr><td rowspan="5">1</td><td rowspan="5">사안
확인</td><td>누가</td><td colspan="4">(관련학생 모두)</td></tr>
<tr><td>사안 기간</td><td colspan="4">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4">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td></tr>
<tr><td>무엇을
/어떻게</td><td colspan="4">(상황, 기간 등 기록)</td></tr>
<tr><td>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td></tr>
<tr><td>2</td><td>작성일</td><td colspan="2">20 년 월 일</td><td>작성 교사</td><td colspan="2">(서명)</td></tr>
</table>

서식 5 》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관련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24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 1부.

서식 6 》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학부모(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비고
생교 2○-1	*○○○순경 (○○**경찰서**)*	*20 .00.00. 00:00*	*○○○ (교사)*	*20 년 0월 0일 00시경 김○○, 박△△학생이 함께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자와 음료를 훔침*	*20 .00.00. 00:00 (유선)*	*20 .00.00. 00:00 (대면)*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서식 7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table>
<tr><td>개최 일시</td><td colspan="5"></td></tr>
<tr><td>개최 장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개최 사유</td><td>관련 학생</td><td>성명</td><td></td><td>학년/반</td><td>/</td></tr>
<tr><td>사안발생
일시</td><td colspan="4"></td></tr>
<tr><td>사안발생
장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위반 사항</td><td>위반 행위</td><td colspan="3"></td></tr>
<tr><td>관련 규정</td><td colspan="3"></td></tr>
</table>

2024 년 월 일

성문고등학교장

서식 8 》

서 면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24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서식 9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사) 재적위원 8명 중 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학년도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조에 ○항에 의거하여 교칙위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학교-생교-20○○-○호 사안으로서 ○○○의 ○○○ 사안에 관한 심의 건입니다.	

2 제척, 회피 절차의 진행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제척,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 경우]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 원)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원) ○○○위원님께서는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00조 제00항 제00호에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심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이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은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제척(또는 회피)되시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귀가해(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위원 귀가 또는 대기)**	제척·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회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

3 위원 주의사항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시간 부족할 경우 아래 ***3가지 주의사항 간단히 전달 또는 생략 가능***) 첫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위원님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안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안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보고 **쟁점, 질의**	(위원장) 그럼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아래 4줄 생략 가능**)* (위원님께서는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선도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교칙위반 사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보고 사전 협의시의 사안 개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안 관련 내용 질의 응답**	심의 시작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 심의진행을 권장함.
대리인 (변호인) 참관 허용 여부 심의 (신청시)	(간 사) 본 사안 ○○○ 학생의 변호인이 본 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변호인 참석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은 ○○○ 학생의 변호인 참석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학생의 변호인의 참석은 허용하되 변호인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주었으면 합니다. 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시간을 주어 변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변호인의 참석을 허락하되,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질의응답, 불복절차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관련 학생 학부모 (보호자) 입장 및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학생 및 보호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입장**	
	(위원장)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 보호자가 아닐 경우 참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음.
기피신청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시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피 신청이 없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학부모(보호자)) ○○○위원을 (~사유)로 기피 신청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의 기피 신청**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를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위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대리인)께서는 기피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의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기실로 이동) (위원장) 이제부터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 여부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 간 상호 협의) ☞ **위원 간 상호 협의** **(위 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라는 해당 학생 측의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 또한, 현장에서 지도했던 ○○○위원님이 해당 학생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피 여부 결정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기피 신청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위원님 기피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위원님에 대한 기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은 귀가(또는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분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을 다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 재입장)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및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주시고,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리인 신청 학생 입실 때 만 안내(해당시) (위원장)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의 응답 전에 입회를 요청한 변호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단, 변호인의 별도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면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밖에 위원회 진행과 절차에 관해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질문 사항 응답) (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해당 사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의 경우 별도 유인물을 제작·안내 가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칙 위반한 사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사안 설명** **(사안 개요 및 경위)** 관련 학생 ○○중 ○○○ ※ 사안일시 : 20○○년 4월 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경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 질의 응답 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추가자료 제출**	
위원과 학생측 질의응답 및 의견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행위의 의도, 계기, 상황, 이유 등을 질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개전의 정, 앞으로의 다짐 등)관련 확인 -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학부모(보호자)를 통해서 가정상황, 학생심리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을 확인 **(위원 및 학생측 질의응답)**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생을 먼저 퇴실시키고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융통성있는 진행 필요
마지막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변호인 진술 3분 (해당 시)** 이상으로 ○○학생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먼저 최종진술 후 학부모(보호자) 진술 등 상황에 맞게 진행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불복절차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귀가하셔도 됩니다.	관련 학생측의 귀가 안내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 유인물 제작·제공 가능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6 참고인 진술 (필요 시, 순서 변경 가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참고인 진술 및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분께서는 참고인○○○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입장)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의 출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해당학생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예시** 1.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의 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안 관련 사실, 관련 학생의 교우관계, 사안 발생 이후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상담사: 관련 학생의 심리상태 관련 등을 확인 3.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4. 다문화 교육 전문가: 다문화 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5.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하거나, 징계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원장) 본 사안과 관련된 참고인(담임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등)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위원회 개최 이전 참고인 사전 조사 필요

7 안건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학생 선도조치 논의	(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중 및 선도기준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개전의 정, 앞으로의 다짐 등에 비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협의**	- 위원들은 조치와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침

8 의결

<table>
<tr><th>절차</th><th>세부 진행 발언</th><th>특이사항</th></tr>
<tr><td>의결
조치결정</td><td>(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의한 결과, 학생생활규정 ○○조 제○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점, 학생이 ~ 반성하는 점, 학생이 ~ 다짐하는 점, 가정에서 ~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인해 ○○○○의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td><td>- 최종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로 조치를 결정

(선도기준표 참조)

- 간사는 필요시 조치 이행 방법 및 집행 가능성,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td></tr>
<tr><td>조치 시간
결정</td><td>(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해 내려진 선도조치의 이행 시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협의

※ 조치 이행 시간 결정
<table>
<tr><th>조치</th><th>학교내의 봉사</th><th>사회 봉사</th><th>특별교육</th><th>출석정지</th><th>퇴학</th></tr>
<tr><td rowspan="2">이행
기간</td><td>( )시간</td><td>( )시간</td><td>( )시간</td><td>( )일</td><td>집행예정일
(년, 월, 일)</td></tr>
<tr><td></td><td></td><td></td><td></td><td>가정학습 부여 여부, 기간 결정</td></tr>
<tr><td>비고</td><td>2시간/일×5일=
10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td><td>5시간/일×5일=
25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td><td>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재량운영가능)</td><td>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td><td>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가능성이 엿보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td></tr>
</table>
(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상정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 '사회봉사 4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로 학생생활인권규정 제00조에 의거 ○, '사회봉사 4시간'으로 의결합니다. (땅땅땅)
(위원장)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 종료 후 본 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td><td>학생의 학습결손을 고려하여 결정</td></tr>
</table>

9 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폐회	(위원장) 지금까지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결서 서명	**('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징계 조치 확인 후 '징계 의결서' 서명

서식 10 》

기피 신청서

* 사안번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성문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00.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서식 11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회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김○○	○ / ○	특별교육 이수	○시간	
이○○	○ / ○	학교 내의 봉사	○시간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성문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서식 12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제척, 기피, 회피 절차의 진행 3.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자: 간사 ○○○

서식 13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사안 번호	학년 / 반	성명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이행 여부
생교 2○-1	*○ / ○*	*○○○*	*학교 내의 봉사*	*5시간*	*20 .00.00. ~ 20 .00.00.*	*흡연*	

[참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공개 문서로 관련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보존기간(00후 0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서식 14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table>
<tr><td>사안 번호</td><td>생교
2○-○</td><td>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td><td colspan="3">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td></tr>
<tr><td>대상 학생
(학년 / 반)</td><td colspan="5"></td></tr>
<tr><td>○○○
(○ - ○)</td><td colspan="5">징계 이행(시행) 계획
<table><tr><td>징계내용</td><td>징계 수준</td><td>징계 기간 / 시간</td><td>방법</td><td>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td></tr><tr><td>학교내의 봉사</td><td>○시간</td><td>20 .00.00.~20 .00.00., 방과후 ○시간씩</td><td>교내외 환경정화 활동</td><td>○○부
(교사 ○○○)</td></tr></table></td></tr>
<tr><td>○○○
(○ - ○)</td><td colspan="5">징계 이행(시행) 계획
<table><tr><td>징계내용</td><td>징계 수준</td><td>징계 기간 / 시간</td><td>방법</td><td>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td></tr><tr><td>특별교육 이수</td><td>○시간</td><td>20 .00.00.,
10:00 ~ 12:00</td><td>상담</td><td>○○학교 / 위클래스
(교사 ○○○)</td></tr></table></td></tr>
<tr><td>○○○
(○ - ○)</td><td colspan="5">징계 이행(시행) 계획
<table><tr><td>징계내용</td><td>징계 수준</td><td>징계 기간 / 시간</td><td>방법</td><td>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td></tr><tr><td>출석정지</td><td>2일</td><td>20 .00.00.~20 .00.00.,
시험기간 제외</td><td>과제 부여 후 가정학습 실시
(가정학습프로그램)</td><td>○○부
(교사 ○○○)</td></tr></table></td></tr>
<tr><td colspan="6">※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td></tr>
</table>

서식 15 》

조치결정 통지서

<table>
<tr><td colspan="4">성문고 학생생활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td></tr>
<tr><td rowspan="2">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td><td>학교명</td><td>학년반</td><td>성명</td></tr>
<tr><td></td><td></td><td></td></tr>
<tr><td>조치결정의
이유</td><td colspan="3"></td></tr>
<tr><td>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td><td colspan="3"></td></tr>
<tr><td>조치결정
내용</td><td colspan="3"></td></tr>
<tr><td>불복절차</td><td colspan="3">◦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td></tr>
<tr><td colspan="4">(담당자: 김의찬, ☎ 031-380-4520)

2024 . . .

성문고등학교장 (직인)</td></tr>
</table>

서식 16 》

수령 확인서

서류명	
수령인 성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수령 장소	
확인 내용	

년 월 일

학생명 :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7 》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청
구
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자택)
휴대전화)</td><td>관계</td><td>본 인 ( )
보호자 ( )</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d colspan="2">[보호자의 관계]</td></tr>
<tr><td>학생</td><td>성 명</td><td></td><td>소 속</td><td colspan="3">( )학교 ( )학년 ( )반</td></tr>
<tr><td colspan="2">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징계 조치결정
통지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재심의 청구
이유</td><td colspan="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td></tr>
<tr><td colspan="8">2024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성문고등학교장 귀하</td></tr>
<tr><td colspan="8">※ 참고사항: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td></tr>
</table>

서식 18 》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학교명	( )학교	소재지	( )시	학교장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24 년 월 일

(재심 청구인)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9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table>
<tr><td rowspan="3">청
구
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d>관계</td><td>본인, 보호자</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d colspan="2">[학생과의 구체적 관계]</td></tr>
<tr><td>학생</td><td>성명</td><td></td><td>소 속</td><td colspan="3">( )고등학교 ( )학년 ( )반</td></tr>
<tr><td rowspan="3">피
청
구
인</td><td rowspan="2">학교명</td><td colspan="2" rowspan="2">( )
고등학교</td><td>소재지</td><td>( )시</td><td rowspan="2">학교장
성명</td><td rowspan="2"></td></tr>
<tr><td>연락처</td><td></td></tr>
<tr><td>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td><td colspan="2"></td><td>결과통지일
(통지서
날짜)</td><td></td><td>결과통지서
발송 방법</td><td>인편, 등기
(등기번호)</td></tr>
<tr><td colspan="5"></td><td>결과통지서
수령일</td><td></td></tr>
</table>

기 준	지도 및 조치 내용
퇴학 처분 대상자의 적법성(시행령 제31조 제5항)	**※징계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를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
징계시 의견진술, 인격존중 등 교육적 방법 적용사항	
사유의 경중에 따른 징계의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부여	**※ 이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내역 등 해당학생이 행한 구체적인 선도 위반 사실을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 (분량의 제한 없음)**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사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퇴학 전 재심의, 가정학습 부여 등 교육적 조치 사항	
기타(인권존중, 종합의견)	**※ 학교의 종합적인 최종 의견을 자세히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피청구인)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하 [첨부: 증빙자료 목록(증빙자료 첨부) 총 8부]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20

재심청구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학생과의 관계	
피청구인	(　　) 학교장

취하 취지	**예) 전·퇴학 조치 수용,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
취하 이유	**예) 전·퇴학 조치 수용,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취하합니다.

2024 년　　월　　일

취하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생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주 소	
보호자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관 계	

상기 본인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사회봉사 의뢰 기관 특별교육 의뢰 기관	
② 이용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수집 · 활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학교, 사회봉사의뢰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③ 제공 항목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보호자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 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서류 보유기간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서식 22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담당교사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1		연 락 처2	
사회봉사기관 담당자	성 명(정)		연 락 처	
	성 명(부)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문고등학교장

서식 23 》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25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사회봉사이수 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24 년 월 일

○○원장 (직인)

성문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4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긴급번호	

2.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교육 ( )			학부모교육 (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 학생( )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 학교폭력유형 :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선도조치사안 :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미인정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교육활동침해유형 :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24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25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 위탁 및 프로그램 참가시 변형하여 사용 가능)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24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서식 26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 본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를 위탁 받은 결과 그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table>
<tr><td rowspan="2">교육기관</td><td colspan="2" rowspan="2"></td><td>교육기관담당자</td><td></td></tr>
<tr><td>기관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학생교육( )
1)~3)표기
학부모교육( )
1)~4)모두표기</td><td>1)학교명</td><td></td><td>2)학생 학년반</td><td>학년 반</td></tr>
<tr><td>3)학생성명</td><td></td><td>4)학부모성명</td><td></td></tr>
<tr><td rowspan="2">학교에서 의뢰한
기간 및 시간</td><td>학생</td><td colspan="3">20 . . .( ) ~ 20 . . .( ) 총( )시간</td></tr>
<tr><td>학부모</td><td colspan="3">20 . . .( ) 00:00 ~ 00:00 총( )시간</td></tr>
<tr><td>특별교육
의뢰사안</td><td colspan="4">학교폭력 조치유형( )호 / 선도 조치유형( )호
교육활동침해 조치유형( )호 중 사유기재</td></tr>
<tr><td>교육평가 및
참고사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교육 이수시간</td><td rowspan="2">학생</td><td colspan="3">20 . . .( ) ~ 20 . . .( ) 총( )시간</td></tr>
<tr><td colspan="2">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td><td>우수 / 보통 / 미흡</td></tr>
<tr><td rowspan="2">학부모</td><td colspan="3">20 . . .( ) 00:00 ~ 00:00 총( )시간</td></tr>
<tr><td colspan="3">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관(명)장 (직인)</td></tr>
</table>

- - - -